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22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추진개요

- 기간 : 2022. 3~12월 (신청·접수 4~10월까지) ※ 기금소진 시 조기마감
- 대상 : 서울시 거주 주거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기타 복지관련 기관 등
- 예산 : 7억 6천만원(지원금 724,200천원)/ 배분 총 6~7회 예정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선정이전 채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불가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후지원 필수 (타구 전출 시, 전출 후 1개월)

□ 22년 주요변경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자산 인정액	100만원 · 100만원 이상의 기 보증금, 예·적금 보험 등 재산이 있을 때 차감하여 선정	185만원 · 청약저축 및 보험금은 자산에서 제외 - 기 보증금, 예·적금금액에서 185만원 이상의 금액만 차감하여 선정
신청서	· 실무자 상담의견 세분화	· 신청서 기입항목 추가 - 주거형태 세분화 - 실무자 상담의견 내 주거 및 자금조달 계획 추가
지급 요청	· 증빙서류 (필수 및 선택서류)	· 증빙관련 서류 서식추가 - 지급 관련 서류 확인 체크리스트 - 보증금 미지급 확인서 - SH공사 전세임대주택 계약대상자 확인서
사후 지원	· 선정 후 3개월 사후지원	· 타구 전출 시, 전출 후 1개월 사후 지원 ※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제출가능
모니터링	· 연말 현장방문+유선 모니터링 진행 (전체가구의 20%)	· 전출 후 1개월 이내 유선 모니터링 실시 - 배분회차별 가구의 20%이내 랜덤 추출 ·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대상자 인터뷰 실시 - 지원효과성 등을 고려한 2-3가구 선정, 집중인터뷰 실시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개괄식) 제출	· 결과보고서 양식 변경 - 사후지원 서비스 항목체크 추가

□ 진행 절차

내용	추진기관	비고
신청접수 안내공지	복지재단	· 매월 1회 (접수 7일 전 안내)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협회 등 접수안내 공문 발송)
대상자 추천	복지기관, 동주민센터 등 신청기관 → 자치구	· 신청서 및 기초자료 양식 빠짐없이 작성 · 위기상황발생 및 신청금액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기관→구청 담당자)
신청접수	자치구 →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 · 신청기관의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 검토 · 소득기준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 자치구 담당자는 전자결재(LDAP)로 신청공문 제출 ※ 서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거나 미비 된 서류가 있는지 신청목록(서식2) 확인 후 최종본 제출
신청내용 검토·정리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 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검토·정리·회의자료 작성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복지재단	·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월 1회) · 분야별 전문가 8인 이상 구성 운영 (학계, 현장, 서울시, 모금회, 주거복지, 관련기관 등) ·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결, 솔루션 제시
결과보고 선정통보	복지재단 → 자치구→신청기관	· 배분심의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 자치구별 선정결과안내(선정여부, 선정금액) 공문송부
지급요청 공문발송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결과 공문 접수 후 바로 신청 가능 · 집행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이내 집행 가능 → 자치구에서 「사용연장 승인」 공문 제출 필요) · 전자결재(LDAP)로 지급요청 공문발송 · 지급요청서류 : 계약서, 임대인통장사본, 서약서 ※ 그 외 주택유형별 추가 필수서류는 체크리스트 확인 (서식8)
기금지원	복지재단	·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입금하지 않음)
결과(정산) 보고서 제출	선정기관→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기관 : 모니터링 (3개월)/ 타구전출 (1개월) · 결과(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 첨부 전자결재(LDAP)로 제출
평가 및 점검	복지재단 → 선정기관·지원가구	· 평가 및 점검 기간 : 사업기간 중 · 선정기관 및 선정 가구 · 집행내역, 만족도, 사후지원 지속여부 등 확인

※ 상기내용 중 기한은 공휴일 제외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신청가능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액)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110%	2,139,293	3,586,094	4,614,171	5,633,188	6,626,967	7,597,704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4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50%(교육)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46%(주거)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40%(의료)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0%(생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2022) 기준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직장가입자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지역가입자	36,12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혼합	-	138,878	180,075	219,871	260,234	307,5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참고자료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인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자로만 가구원으로 산정
- ※ 단,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예)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 (주민등록표 기준)

-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 행복e음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조회가 불가하나,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가능 예) 대상자(주민등록표상 2인가구 : 어머니, 아동)가 따로 사는 아버지(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조사


- (원칙)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등을 토대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조사생략)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로 같음
- (해외체류)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부과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 명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은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B" 낮은 건강보험료×0.5

□ 담당자연락처

-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 지역공동체팀 신민정
- 메일/전화 : handtong@welfare.seoul.kr / 02-6353-0303



2022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1. 자치구 담당자 업무매뉴얼
 2. 신청기관 담당자 업무매뉴얼
 3. 신청서 및 결과보고 등 서식
 4. 사업 FAQ
- 



자치구 담당자 업무매뉴얼

I

주요역할

- 따듯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추진되는 희망온돌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취약위기에 놓인 구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신청 및 결과안내 등 중간조직 역할을 하며, 신청기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II

업무절차

주요업무	전달과정	업무빈도
신청안내	재단⇒자치구⇒신청기관	매월 4주(월 1회)
↓		
접수 취합 및 자료 확인	신청기관⇒자치구	매월 1주~2주
↓		
신청서 제출	자치구⇒재단	매월 2주 금요일
↓		
선정안내공문 접수 및 신청기관 전달	재단⇒자치구⇒신청기관	매월 4주
↓		
지원금 지급요청	선정기관⇒자치구⇒재단	상시
↓		
결과보고서 제출	선정기관⇒자치구⇒재단	상시
↓		
연장·취소자 관리	선정기관⇒자치구⇒재단	상시

III

세부업무

- 업무담당 : 자치구 희망온돌사업 담당자 (※자치구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연중 사업담당자 변경 시, 재단에 담당자 변경안내 필수

1. 신청안내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 접수 1주일 전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문서접수 후 신청기관 (동주민센터 및 관내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전달
 - 접수안내 공문에는 접수기간, 심의일자, 결과발표일이 명기되어 있으니, 명확한 일정까지 표기하여 공문전달

★ 중요 ★

- 복지관 및 주거복지센터는 전자문서 전달이 되지 않는 곳으로, 담당자 파악 후 메일전송 필요
- 『신청기관 ▶ 자치구』 신청기간은 자치구의 편의에 따라 변경하여 신청기관으로 전달가능 단, 『자치구 ▶ 재단』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2. 접수취합 및 자료확인

- 취합기간 : 신청접수 안내 공문에 표기된 **‘자치구 ▶ 재단’ 제출일 준수**
- 취합방법
 - 동주민센터 ▶ 자치구 전자결재(LDAP) 로 신청접수
 - 복지관 및 주거복지센터 등 민간기관은 ▶ 자치구 담당자 메일로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자치구 담당자 작성이 필요함으로 한글파일(.hwp)로 제출
 - 민간기관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서 내 **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 지원여부**를 행망을 통해 확인 후 작성함. (민간기관: 복지관, 자활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 제출자료 목록은 서명 후 스캔하여 PDF, 이미지파일로 제출
 - 자치구 담당자 취합 및 자료 검토

★ 중요 ★ 자료 검토 시 필수체크사항 ☑

[신청서]

- ☑ 신청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되었으며,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 ☑ 민간기관 신청 시, 신청서 1면, 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지원여부 행망확인 후 작성 주민센터 신청 시,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함.
- ☑ 실무자의견란 부실할 경우 보완요청 (※ 21년도 미선정 사유 2위 : 서류미비 및 내용부실)
- ☑ 신청서 2면, 자치구 담당자 이름, 연락처 작성 후 최종제출일 작성 제출

[제출자료 목록 및 개인정보]

- ☑ ‘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당사자, 담당자, 팀장서명 확인
- ☑ ‘22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체크 및 서명 확인

[기타 증빙자료]

- 목록에 의거 증빙자료 잘 들어왔는지 확인

3. 신청서 제출

- 제출필수자료 : **신청서**_서식1, **제출자료 목록**_서식2, **개인정보동의서**_서식3, **등본 소득확인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현 거주지 계약서, 증빙서류**_서식 4,5,6
- 신청기한에 맞추어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제출 서류목록**

구분	첨부서류	양식	비고
필수서류	신청서	서식 1	대상자 상담을 바탕으로 신청기관 담당자가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3	대상자 본인 직접 작성 서명
	현 거주지계약서	-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등본)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차상위 : 수급증명서 증명서 없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장기요양보험비 제외)
추가서류	현 주거상태 확인서류 - 해당 시, 필수제출	서식 4	월세체납(납부) 확인서
		서식 5	보증금 미납 확인서
		서식 6	사용대차 확인서
		-	고시원 거주확인서, 철거안내문, 퇴거명령 시 내용증명서 등
		-	시설이용(퇴소예정)확인서
		-	임대주택 선정 대상자 확인서류 및 사전 계약자료 등 -LH/SH 임대주택 선정안내문, 새로 이주할 거주지 계약서 -LH/SH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잔액 표기된 납부지로 등
	부채증빙 자료	-	-파산신청자료, 금융기관 등의 부채관련 자료 등 -대출관련 내역 등,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내역 등
위기상황 발생 관련 증빙자료	-	-사례관리 관련 기록문서 및 회의록 -열악하거나 안전에 취약한 주거환경 사진자료 등	

★ 중요 ★

- 공문 및 첨부서류는 행망을 통한 전자문서(LDAP)로만 가능 ※ 첨부서류 메일로 전송 시 접수불가
- 용량이 커서 한 번에 보내기 어려울 경우, 당사자명 별로 결재하여 제출
1명의 용량이 크면 2번에 나누어 보내거나 PDF 용량 줄이는 별도 프로그램 활용

수신자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참조)

제목 2022년 00구 2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홍0동 외 1)

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123(2022.4.0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2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불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가. 신청자현황

연번	대상지명	생년월일	사례관리기관	신청금액(원)	비고
1	홍길동	81.07.14	000주민센터	5,500,000	통합 사례관리대상자
2	이순신	49.03.10	000복지관	1,500,000	-

불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끝.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 신청공문 제출 예시

4. 결과안내 공문 접수 및 신청기관 전달

○ 자치구 ▶ 신청기관(동주민센터,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공문으로 전달

- 재단에서 심의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결과 공문 송부 (재단→자치구)
- 신청기관에 선정결과 및 심의(솔루션) 내용 전달
- 신청기관별로 구분하여 전달
- 신청금액과 선정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선정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중요 ★

- 금액선정 시 기보유 보증금, 예·적금 등 자산이 있으면 지원금액에서 제외(차감)하고 산정됨
- 예·적금의 경우 자산인정액은 185만원으로 보유 예·적금에서 185만원 이상 초과분을 선정금액에서 제외함. 단, 청약저축 및 보험금은 차감하지 아니함

예시 1) 보증금 200만원 월세30만원 민간주택 거주 중, 청약저축 200만원 보유한 대상자가 전세임대주택 대상자에 선정되어, 임대주택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550만원 신청 시,
 [신청액 550만원-기보유보증금 200만원 = 350만원 지원가능]

*청약저축액과 보험금은 자산인정액에 산정하지 아니함

예시 2) 고시원에서 거주중인 적금 300만원을 보유한 대상자가 임대주택에 선정되어,
 본인부담금 640만원이 필요해 최대신청 가능금액인 600만원 신청 시,

[신청액 600만원- (저축액 300만원-예·적금인정분 185만원) = 485만원 지원가능]

수신자 00구 복지정책과

(참조) 희망은돌사업 담당

제목 2022 3차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결과안내 및 협조요청(00구)

1. 평소 귀 구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제3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관에 통보와 진행절차에 협조 바랍니다.

가. 심사결과

No	성명	신청기관	결과	신청금액	선정금액	십 의 (슬루션)내 용
1	홍길동	000 주민센터	선정	6,000,000	5,500,000	- 기 납부 계약금 제한 550만원 지원 - 서울금융복지센터 상담연계 권고
2	이순신	00구청	선정	5,000,000	5,000,000	- 신청금액 지원함 - 본인부담금 5%까지 지원함

나. 진행절차

- **2022. 7. 30(금)까지 지급요청, 최대 9. 30(목)까지 연장가능, 이후 취소됨**
- 지급요청은 자치구를 통해 공문접수 및 관련자료 제출
- 선정 후 3개월간 사후지원 후 결과보고 제출 (9.30한).

[서울시복지재단▶자치구 선정결과안내 공문예시]

5. 지원금 지급요청

- (당사자)집 계약 후 ▶ 선정기관 (서류확인) ▶ 자치구 제출(서류 재확인)
- 제출방법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제출자료 : **서약서,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필수서류)**
기타 주택유형별 추가 제출자료 (*서식8. 지급요청서류 체크리스트 참조)
- 제출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 및 계좌번호가 별도 제출된 통장사본 명의 및 계좌번호와 동일해야함.
 - 첨부파일은 글자가 깨지지 않고 선명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파일이어야 함
 - 지급요청 금액은 선정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제출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 처리

★ 중요 ★

- 임대계약서 상 대상자가 기 지급한 계약금은 소급적용하지 않음

예시1) 선정금액 600만원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증금 60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잔금 550만원만 지급함.

예시2) 선정금액 600만원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증금 65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잔금 600만원 중 선정금액 600만원 전액 지급가능

⇒ 서약서 금액 및 지급요청 공문에는 선정금액이 아닌, 실 납입잔액으로 변경하여 요청

- 지급요청 시, 주택유형별 서류가 가감(加減)될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확인 (서식 8. 체크리스트)

구분	첨부서류	확인내용	
기본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 이사 갈 집 계약서 - 임대주택일 경우 공사대상자, 임대인대상자용 2부 모두 제출 - SH전세임대 신규계약자, LH매입임대 신규계약자는 계약사후 제출 (별도 계약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 스캔본이나 사진이나 숫자나 이름 명확하게 표기	
	임대인 통장사본	- 계약서 내 기입된 임대인 성함 및 은행 계좌번호가 통장사본과 동일한지 확인	
	서약서 (서식9.)	- 신청기관 담당자와 대상자가 함께 작성·서명 - 계약서에 근거한 실제 청구금액(납입잔액)으로 작성	
추가 선택 서류	SH 전세 임대주택 대상자 계약확인 서약서 (서식10.)	- SH(신규)계약 당사자는 필수 제출 - 권리분석 결과에 의거, 서약서 금액 작성 - 대상자가 작성·서명 후 신청기관에서 이를 확인 (기관직인 가능)	
	매입임대	납입지로	- 잔금이 명확하게 표시된 지로납입 용지 (해당자만) - 납입지로 제출 시 임대인 통장사본 불필요
		LH 매입임대 입금안내문	- 계약자 전용 가상납입계좌가 명기되어있는 LH안내문 제출 (우편물 표지도 함께 첨부)
		계약사실 확인원 (공사양식)	- 최저보증금 전환 조건부 선정 시에만 제출 (해당자만) - 실 전환된 최저보증금액이 명기되어 있는지 필수확인 - 해당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출력가능
영구임대	납입지로	- 잔금이 명확하게 표시된 지로납입용지 (해당자만)	
기타		- 기타 재단에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 등	

제 목 : 2022년 3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기금지원요청 (홍0동)

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1234(2022.00.00.)호 문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2022년 제 3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결정 대상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급 관련 서류를 송부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대상자	신청기관	선정금액(원)	지원금액(원)	비고
홍길동 (80.07.14.)	00동주민센터	6,000,000	5,500,000	SH 전세임대계약으로 본인부담금 5%만 청구함
이순신 (60.07.14.)	00종합복지관	5,000,000	5,000,000	민간가구 계약
신민정 (50.07.14.)	00종합복지관	3,000,000	2,800,000	LH 영구임대계약으로 선정금액에서 기 지급 계약금 30만원 제외한 280만원 청구함

- 붙임 1. 홍길동 지급관련 서류(서약서, 통장사본, SH전세임대 계약확인서약서) 각 1부.
 2. 이순신 지급관련 서류(서약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서약서) 각 1부.
 3. 신민정 지급관련 서류(서약서, 임대차계약서, LH보증금납부 지로용지) 각 1부. 끝.

본 문서는 민감한 또는 고유식별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니 접수 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원금 지급

- 서울시복지재단 ▶ **임대인 계좌 직접 대납** (대상자 또는 선정기관으로 입금불가)
 - 입금자는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됨을 안내
- 지급요청 공문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토,일,공휴일 제외) 입금
 - 단, SH전세임대주택 신규계약 대상자의 경우, 계약확인 절차상 약 10일 정도 소요
- 입금일 당일 또는 다음날 선정기관 담당자에 입금확인 유선 통보(재단)
- 지원금은 선정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선정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서 상 명기된 실제 필요금액만을 지급함.
 - 선정금액이 600만원이라도, 보증금 500만원을 계약했다면 500만원만 지급
 - 매물확보를 위해 대상자가 기 지급한 가 계약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7. 결과보고서(서식7.) 제출

- **선정기관 (선정 후 3개월 모니터링) 결과보고 작성 ▶ 자치구 제출**
 - 단, 타구로 전출 한 경우, 전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가능 (신청기관 작성원칙)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 **결과보고서, 등본 (하나로민원 열람용도 가능) 필수제출**
- 결과보고는 연구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한글파일(.hwp)로 송부 될 수 있도록 함
-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결과 표기 되었는지 확인

8. 연장 · 취소자 관리

- **선정 후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선정 3개월 이후 취소되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 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 가능**
 - 지급요청 기한 초과 시, 재단 ⇒ 신청기관에 연락하여 확인
 - 선정 후 2개월 이내 연장 공문 없을시, 자동 취소 통보 예정
- **선정취소 경우, 해당 신청기관을 통해 선정 취소사유가 포함된 공문 전달 필수**
 - 연장 및 취소자 공문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 **차수 및 지원금, 취소사유를 공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 공문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 문서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 필수

제 목 : 2022년 3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선정취소 요청 (홍0동)

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1234(2022.00.00.)호 문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구 2022년 제 3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선정대상자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고자 합니다.

□ 지원 취소내용

대상자	신청기관	선정차수	선정금액(원)	취소사유
홍길동 (80.07.14.)	00동주민센터	3차	5,500,000	예시) 2022 .5월, 00재단 긴급SOS 사업 1천만원 지원에 선정되어 타 기관 지원으로 연계하게 되어 취소 신청함

붙임 : 신청기관 지원취소공문 1부. 끝.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 포기신청 통보 공문예시]

9. 기타 협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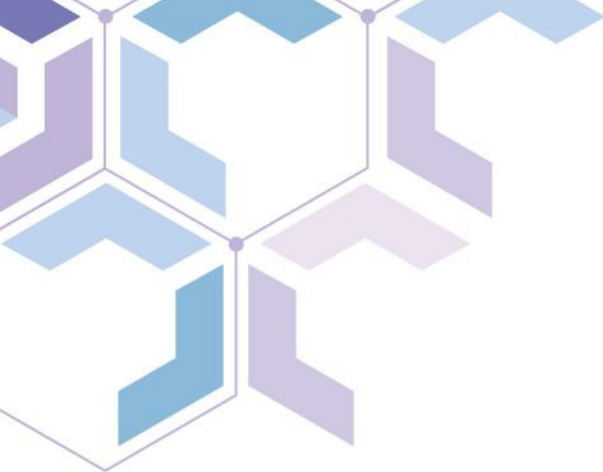
○ 대상자 및 선정기관 담당자 모니터링 추진 협조

- 지원·이사 후 1개월 이내 지원가구의 20% 무작위 선발하여 유선모니터링 진행
- 대상자 및 해당 선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거변화 확인, 애로사항 및 사업 건의사항 청취
- 협조요청사항 : 선정기관 담당자 협조 독려

○ 사업홍보를 위한 우수사례 추천 및 인터뷰 협조

- 지원이후 주거환경 및 삶의 질 변화가 큰 가구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홍보추진
- 대상자 심층 대면 인터뷰 진행 (2~3가구)
- 협조요청사항 : 대상가구 추천, 우수 선정기관 담당자 추천

○ 기타 민원 발생 시 일괄 대응 협의 등



신청기관 담당자 업무매뉴얼



I

주요역할

- 주거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선정후 3개월 간 사후지원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추진되는 사업설명회, 간담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II

업무절차

주요업무	전달과정	업무빈도
신청안내	자치구⇒신청기관⇒대상자	상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관⇒자치구	매월 1주~2주
↓		
선정안내	자치구⇒신청기관⇒대상자	매월 4주
↓		
지원금 지급요청	대상자⇒선정기관⇒자치구	대상자 주택계약 시
↓		
사후지원	선정기관⇒대상자	상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선정기관	선정 후 3개월 후 (타구 전출 시 1개월)
↓		
연장·취소자 관리	대상자⇒선정기관⇒자치구	상시

III

세부업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담당 : 동복지플래너, 사회복지사

- 본 사업은 단순·자원 연계가 아닌 3개월간의 사후지원 진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당사자가 주거확보 후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후지원 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연계 가능한 복지플래너 또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도록 권고함.

1. 신청안내

○ 회차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문 확인

- 회차별 자치구에서 기관에 신청안내 공문 전달 (복지재단⇒자치구⇒신청기관)
- 신청안내공문에 신청접수 마감일, 기금배분 심사일정 및 결과발표일 명시되어 있음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접수 마감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일정 확인 필수
- 매월 초 접수예정 (4~10월, 6~7회)으로 기금소진 시, 사업 조기마감

○ 신청가능 대상 확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주거위기 취약가구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주소자의 경우 담당자가 서울시 실 거주 확인
- 서울시민이 선정 이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불가
타 시도민이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 재단담당자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가능여부 확인
- 대상자별 신청서 작성 절차확인
 - 기 사례관리대상자 ⇒ 사업안내 ⇒ 동의 시,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검토 ⇒ 자치구 제출
 - 당사재(직접방문) ⇒ 내부사례회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검토 ⇒ 자치구 제출

★ 참고자료 ★

[21년 기준 선정자 특성]

-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중위소득 50%~120%(건강보험료) → 차상위순으로 선정됨

[21년 최다 미선정사유]

- ▶ 사유 : 최대지원금 이상의 자산소유 (600만원 이상 기 보유보증금, 예·적금 등)
- ▶ 긴급한 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 없이, 최대지원금 이상의 자산소유 시
미 선정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 자산관련 내용 필수검토 필요

[위기긴급사항 사유 예시]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 준용

- ▶ 현 거주지 내외에 화재나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 ▶ 현 주거지가 비정형주택(노숙인 시설,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으로서 안정적이지 않는 경우
- ▶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범죄 등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 명도소송 등의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은 대상자 상담(면담) 및 증빙서류를 통한 사실만을 기입
- 신청서(서식1.) 작성방법

항목	신청서 작성방법 및 확인내용	
차수	- 접수안내 공문확인 후 차수 확인 후 기입	
신청금액	- 사후지원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필요로 하는 최대치 금액 작성 - 심의 시, 보증금 잔액 및 저축금액등 자산 확인 후 제외하여 선정함.	
사례관리 대상자	- 신청기관 기존사례관리 대상자 : 사례등록일 작성 - 신규발굴대상자 : 직접방문(대상자 → 신청기관으로 온 경우), 이웃신고, 타 기관에서 이관, 기타 (예시/복지플래너 활동으로 발굴 등) 확인	
가족사항	- 대상자는 세대주가 원칙이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세대주가 아닐 경우, 실무자 상담결과 및 의견란에 그 사유를 작성	
경제상황	- <u>사회보장구분, 긴급복지지원여부는 행정망으로 확인하여 작성</u> 동주민센터는 직접 작성, 민간 신청기관은 자치구에서 작성·확인함 - 기준중위소득 50~120% 이내의 경우 증빙자료(건강보험납입내역서, 저축액, 임차보증금 계약서, 부채증명사료 등) 면밀히 확인	
주거상황	주거형태	- 면담 및 거주중인 계약서확인을 통해 주거환경 확인 - 담당자가 판단하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확인 - 거주중인 계약서(또는 거주확인서)를 통해 정확한 보증금액 및 임대료 파악하여 기입 - 임대주택(SH, LH)의 경우 총 보증금액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둘 다 작성
	주거비 체납	- 체납여부 확인 - 월세체납이 있을 때 주거비체납확인서(서식4.) 작성 후 필수 제출
	사전계약 및 임대주택 선정현황	- 사전계약사항이 있을 시, 해당사항 있음 및 주택종류 체크 후 이사 갈 집의 보증금 및 임대료 기입 - 임대주택 신규 선정대상자는 해당사항 있음에 체크 후 SH, LH중 선택 임대유형 (영구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중 해당유형 체크한 뒤, 총 보증금액 및 본인부담금액 필수 기입 - 임대주택 신규선정자는 선정안내문 또는 추가증빙자료 필수제출

- **실무자 주요상담결과 및 의견란은 배분심의 시, 핵심자료로 활용됨으로,**
주거·가족 경제상황, 사후주거 및 관리계획 등 다각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

항목	신청서 작성방법 및 확인내용		
신청 기관 실무 자의 주요 상담 결과 및 의견	위 기 구 분	① 현거주지 위기 ★중요	-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이유와 환경·상황 등 자세하게 기술 - 현 주거환경 서술, 퇴거위기 중심으로 서술 (무료임차, 명도소송, 월세체납액 및 사유 등)
		② 가족구성원 간관계위기	-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배경 등을 기술 - 이혼, 별거, 사별, 관계단절 등 가족관계 등
		③ 건강위기	- 본인 및 동거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기술 - 질병 및 치료 상황 등
		④ 경제력 위기	- 본인 및 동거가족의 자산, 직업, 소득 상황 등을 기술 - 수급비내역, 직업소득, 실직, 자산, 채무현황, 안정적 수입발생 가능성 등
		⑤ 자원 연계망위기	- 공공과 민간 자원망의 연계 및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 등을 기술 - 공공 및 민간 서비스지원내역, 사례관리 내용 등
사 후 계 획		⑥ 주거계획 ★중요	- 향후 주거지 위치, 유형, 금액규모, 기타 자금조달계획 기술 - 향후 희망 주거지 유형 필수 작성 (민간주택 물색예정, 임대주택신청, 영구주택, 기존주택 재계약 등) - 보증금 및 월세범위 등 예상금액 규모 작성 - 임대주택 선정자의 경우 보증금 잔액 및 월세자금조달계획 매입임대 주택의 본인부담금 최저전환 계획 등 작성
		⑦ 사후관리 계획	- 지원 및 이사 이후 신청기관 모니터링, 사후관리 방안 - 신청이후 모니터링 방안, 타구이관 계획, 기타 사례관리계획 등

○ 신청서(서식2.) 신청자료 목록 작성

- 목록작성이유는 신청 제출자료를 당사자가 확인하고, 기관차원에서 최종 확인하기 위함
- 당사자, 담당자, 팀장(기관장)의 서명을 필히 받고, 서명 후 스캔본 첨부
- 제출목록에 체크표시하고, 추가서류는 해당 시 필수 제출하도록 함

3. 신청서 제출

○ 제출 필수자료

- 신청서_서식1, 신청 제출자료 목록_서식2, 개인정보동의서_서식3, 현거주지 계약서, 소득확인 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등본

○ 기타 추가서류

- 월세체납확인서, 보증금 미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부채증빙서류 등

○ 신청기한에 맞추어 **신청기관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 전자공문 수·발신이 되지 않는 민간기관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확인 후 **신청서를 자치구 담당자 메일로 접수** (파일용량이 크지 않게 전달)
- 메일전송 후 필수적으로 자치구 담당자 유선확인을 통해 신청누락 방지

○ 제출 서류목록

구분	첨부서류	양식	비고
필수서류	신청서	서식 1	대상자 상담을 바탕으로 신청기관 담당자가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3	대상자 본인 직접 작성 서명
	현 거주지계약서	-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등본)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차상위 : 수급증명서 증명서 없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장기요양보험비 제외)
추가서류	현 주거상태 확인서류 - 해당 시, 필수제출	서식 4	월세체납(납부) 확인서
		서식 5	보증금 미납 확인서
		서식 6	사용대차 확인서
		-	고시원 거주확인서, 철거안내문, 퇴거명령 시 내용증명서 등
		-	시설이용(퇴소예정)확인서
		-	임대주택 선정 대상자 확인서류 및 사전 계약자료 등 -LH/SH 임대주택 선정안내문, 새로 이주할 거주지 계약서 -LH/SH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잔액 표기된 납부지로 등
	부채증빙 자료	-파산신청자료, 금융기관 등의 부채관련 자료 등 -대출관련 내역 등,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내역 등	
위기상황 발생 관련 증빙자료	-사례관리 관련 기록문서 및 회의록 -열악하거나 안전에 취약한 주거환경 사진자료 등		

4. 심사결과 확인 및 안내

○ 자치구 공문내용 확인 (배분심의위원회 후 12일 이내)

- 신청기간 마감일 후 2주 이내 배분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며, 배분심의위원회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안내 공문 발송 (복지재단 ⇒ 자치구), 이후 자치구에서 해당기관으로 별도 공문 송부 (복지재단 ⇒ 자치구 ⇒ 신청기관)
- 결과발표일은 신청안내 공문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해 두고, 결과안내공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치구 담당자에게 확인
-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에게 확인

○ 미선정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결과는 ‘배분심의위원회’ 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되며, 미 선정 사유 및 솔루션에 대해서 안내
- 타 민간자원 및 공공임대에 대해 안내
- 서류작성 및 증빙자료 미비하여 탈락한 경우, 다음차수에 보완하여 제출 시 재심의 가능

○ 선정 대상자에게 안내

- 재단에서 제공되는 선정안내문 출력 후 제공 (*선정안내문은 결과안내 공문으로 발송됨)
- 집은 당사자가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
- 단, 장애 및 노인 등 집을 당사자가 직접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담당자가 동행하여 지원 가능 (관내 주거복지센터 협조 가능)
- 선정 후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최장 3개월)
선정 후 2개월 이내 연장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자동 선정취소
- 선정 3개월 이후 개인사정에 의하여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

★ 중요 ★

- 금액선정 시, 기보유 보증금, 예·적금 등 자산이 있으면 지원금액에서 제외(차감)하고 산정됨
- 예·적금의 경우 자산인정액은 185만원으로 보유 예·적금에서 185만원 이상 초과분을 선정금액에서 제외함. 단, 청약저축 및 보험금은 차감하지 아니함

예시 1) 보증금 200만원 월세30만원 민간주택 거주 중, 청약저축 200만원 보유한 대상자가 전세임대주택 대상자에 선정되어, 임대주택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550만원 신청 시,
[신청액 550만원-기보유보증금 200만원 = 350만원 지원가능]

*청약저축액과 보험금은 자산인정액에 산정하지 아니함

예시 2) 고시원에서 거주중인 적금 300만원을 보유한 대상자가 임대주택에 선정되어,
본인부담금 640만원이 필요해 최대신청 가능금액인 600만원 신청 시,
[신청액 600만원- (저축액 300만원-예·적금인정분 185만원) = 485만원 지원가능]

5. 지원금 지급요청

- (당사자)집 계약 후 서류준비 ▶ 선정기관 (서류확인) ▶ 자치구 제출(서류 재확인)
- 제출방법 : 선정기관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제출자료 : 서약서,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필수서류)

기타 주택유형별 추가 제출자료 (서식8. 지급요청서류 체크리스트 참조)

○ 제출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 및 계좌번호가 별도 제출된 통장사본 명의 및 계좌번호와 동일해야함.**
- 첨부파일은 글자가 깨지지 않고 선명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파일이어야 함
- 지급요청 금액은 선정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제출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 처리

★ 중요 ★

- 임대계약서 상 대상자가 기 지급한 계약금은 소급적용하지 않음

예시1) 선정금액 600만원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증금 60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잔금 550만원만 지급함.
 예시2) 선정금액 600만원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증금 65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잔금 600만원 중 선정금액 전액 지급가능

- 서약서 금액 및 지급요청 공문에는 선정금액이 아닌, 실 납입잔액으로 변경하여 요청

○ 제출 필수 및 추가서류 목록

- 지급요청 시, 주택유형별 서류가 가감(加減)될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확인 (서식 8. 체크리스트)

구분	첨부서류	확인내용
기본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갈 집 계약서 - 임대주택일 경우 공사대상자, 임대인-대상자용 2부 모두 제출 - SH전세임대 신규계약자, LH매입임대 신규계약자는 계약사후 제출 (별도 계약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캔본, 사진파일 내 숫자, 성명 등 뚜렷한 표기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 계약금 지급여부 확인 등 실 지급요청금액 확인

구분	첨부서류	확인내용
기본 필수 서류	임대인 통장사본	- 계약서 내 기입된 임대인 성함 및 은행 계좌번호가 통장사본과 동일한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납입지로용지(SH, LH공사용) 가 있을 시 통장사본 제출생략
	서약서 (서식9.)	- 신청기관 담당자와 대상자가 함께 작성·서명 - 계약서에 근거한 실제 청구금액(납입잔액)으로 작성
추가 선택 서류	SH 전세 임대주택 대상자 계약확인 서약서 (서식10.)	- SH(신규)전세임대 계약당사자는 필수 제출 - 권리분석 결과에 의거, 서약서 금액 작성 (보증금액과, 본인부담금 필수 확인) - 대상자가 작성·서명 후 신청기관에서 확인 (기관직인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SH 전세임대는 본인부담금 입금 전, 계약서 작성이 불가하여, 계약확인절차를 별도 진행함 - 대상자 SH공사 계약확인 서약서 추가 작성 및 제출 - 복지재단 ↔ SH공사 전세주택부 = 매물권리분석 확인
	납입지로	- 잔금이 명확하게 표시된 지로납입 용지 (해당자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납입지로용지(SH, LH공사용) 가 있을 시 통장사본 제출생략
	LH 매입임대 입금안내문	- LH 매입임대 선정 대상자만 제출 - 계약자 전용 가상납입계좌가 명기되어있는 LH안내문 제출 (우편물 표지도 함께 첨부) - 선정자 안내 시 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주택 동 호수 및 금액 표기가 된 매물 안내문도 함께 제출 (안내문 내 입주예정 매물정보 체크)
	계약사실 확인원 (공사양식)	- 최저보증금 전환 조건부 선정 시에만 제출 (해당자만) - 실 전환된 최저보증금액이 명기되어 있는지 필수 확인 - 해당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출력가능 (방문도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SH 매입임대주택은 수정·변경된 계약서와 함께 제출
영구임대	납입지로	- 잔금이 명확하게 표시된 지로납입용지 (해당자만)
기타		- 기타 재단에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 등

[선정기관 ▶ 자치구 지급요청 공문예시]

수신자 : 00구 복지정책과

제 목 : 2022년 3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기금지원요청 (홍0동)

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1234(2022.00.00.)호, 00구 복지정책과-1234(2022.00.0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3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결정 대상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급 관련 서류를 송부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대상자	신청기관	선정금액(원)	지원금액(원)	비고
홍길동 (81.07.14.)	00동주민센터	6,000,000	5,500,000	SH 전세임대계약으로 본인부담금 5%만 청구함
이순신 (60.07.14.)	00종합복지관	5,000,000	5,000,000	민간가구 계약
신민정 (50.07.14.)	00종합복지관	3,000,000	2,800,000	LH 영구임대계약으로 선정금액에서 기 지급 계약금 30만원 제외한 280만원 청구함

- 붙임 1. 홍길동 지급관련 서류(서약서, 통장사본, SH전세임대 계약확인서약서) 각 1부.
 2. 이순신 지급관련 서류(서약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서약서) 각 1부.
 3. 신민정 지급관련 서류(서약서, 임대차계약서, LH보증금납부 지로용지) 각 1부. 끝.

본 문서는 민감한 또는 고유식별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니 접수 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원금 지급

- 서울시복지재단 ▶ **임대인 계좌 직접 대납** (대상자 또는 선정기관으로 입금불가)
 - 입금자는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됨을 안내
- **지급요청 공문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토.일,공휴일 제외) 입금**
 - 단, SH전세임대주택 신규계약 대상자의 경우, 계약확인 절차상 약 10일 정도 소요
- **입금일 당일 또는 다음날 선정기관 담당자에 입금확인 유선 통보**
- **지원금은 선정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선정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서 상 명기된 실제 필요금액만을 지급함.**
 - 선정금액이 600만원이라도, 보증금 500만원을 계약했다면 500만원만 지급
 - 대상자가 기 지급한 가계약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7. 사후지원

- 선정기관에서 임차보증금 선정 후 3개월간 사후지원(모니터링) 필수
 - 단, 타구로 전출 시 전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능
- 당사자 이사 후 거주지 모니터링하며, 사진 촬영 필수
 - 이사 후 실제 거주 하는지 방문 모니터링 (1회) 실시
 - 타구 전출 등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울시, 대상자로부터 사진을 받아 확인
- 이사 후 어려운 점 확인하여, 자원연계 및 복지서비스 안내 진행
 - 타 구. 타 동 전출 시, 해당 동에 대상자 연계 통한 복지서비스 안내 지원
 - 민간 과 공공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사후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

구분	사후지원 서비스 예시
현금	월세지원, 이사비용지원, 생활비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기타 주거급여지급 등
현물	생활용품, 가구 지원, 전자제품 지원, 식료품 지원, 기타 물품 등
서비스	복지정보 상담, 안부서비스, 이사진원(자원봉사), 심리상담, 금융상담, 법률상담 집수리서비스, 주거상담서비스 등

8. 결과보고서 작성

- 원칙적으로 결과보고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 제출
 - 단, 타구로 전출 시 전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 제출가능
- 결과보고서(서식 7.) 작성방법

항목	신청서 작성방법 및 확인내용
방문일자	- 이사 후 최초 가정방문일을 기입 -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울시 미 방문으로 표기하되, 보고서에 사유기입
신청차수	- 선정안내 공문 참조하여 선정된 차수를 작성
주소	- 이사 후 주소를 작성
지원 후 계약금액	- 민간주택일 경우 보증금 및 월 임대료(관리비포함) 작성 - 임대주택인 경우 총 보증금, 그중 본인부담금 그리고 월 임대료 모두 작성 *지급요청 시 제출한 계약서를 보고 정확한 금액확인
이사일	- 이사일자 작성, 시기 미도래일 경우, 0월0일 예정으로 작성

주거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택 및 임대주택(유형별) 해당 칸에 체크 -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계약서 확인 후 정확한 주택유형 확인 - 건축유형상 단독,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등 세부유형 확인 - 지상. 지하 주거위치 확인 (*세부주소 확인 또는 대상자 인터뷰로 파악)
보증금 지원 이후 제공된 서비스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확인 - 해당 시 O X표시 후 현금, 현물, 서비스 유형별 해당 서비스체크 함
주거지사진	- 주거지 이전 사진 있을 경우 <u>전/후 사진</u> 삽입
사후지원 상담기록	- 어떠한 상담들이 제공되는지 확인위한 시간 순, 상담내용 간략히 작성
변화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 적응하는 복합적 변화를 확인 - 주거, 건강, 근로, 경제, 심리적 안정, 가족·사회관계 등 욕구유형별 기입될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하여, 이전 주거지보다 청결한 환경임. 곰팡이도 없고, 화장실 및 주방을 제대로 갖춤 ○ 경제: 서울금융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파산신청을 진행하여, 개인회생중임 ○ 심리적안정 : 전에 있던 우울감 및 고립감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표정이 밝았으며, 본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해주는 주민센터에 만족감을 드러냄 </div>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추가지원 계획, 전출 자치구/동 연계 계획 등 작성 등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유지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월세납부사항 체크 예정 ○ 복지관 이외 주거지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종교시설에 동행예정 ○ 관할 동 주민센터, 체육공원 등의 시설이용 및 복지정보제공 </div>
만족도	- 사전. 사후 만족도 조사임을 확인하고, 대상자 면담 (또는 유선)을 통해 해당 만족도변화도 확인
증빙자료 (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한 집으로의 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1부. - 동 주민센터, 구청의 경우 하나로 민원 열람용 제출가능 - 제출불가 시 보고서 및 공문에 미제출사유 필수 명시

9. 결과보고서(서식7.) 제출

- **선정기관 (선정 후 3개월 모니터링) 결과보고 작성** ▶ 자치구 제출
 - 단, 타구로 진출 한 경우, 전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가능 (신청기관 작성 원칙)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 결과보고서, 등본 (하나로 민원 열람용도 가능) 필수 제출
- 결과보고는 연구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한글파일(.hwp)로 송부 될 수 있도록 함
-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결과 표기 되었는지 확인, 담당자 서명은 생략함.

10. 연장 · 취소자 관리

- **선정 후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연장공문 필수)**
- **선정 3개월 이후 취소되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 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 가능**
 - 지급요청 기한 초과 시, 재단 ⇒ 신청기관에 연락하여 확인
 - 선정 후 2개월 이내 연장공문 없을 시, 자동 취소통보 예정
- **선정취소 경우, 자치구로 취소사유가 포함된 공문 전달 필수**
 - 연장 및 취소자 공문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 **차수 및 지원금, 취소사유, 연장사유를 공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 공문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 문서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 필수

수 신 자 : 00구 복지정책과

제 목 : 2022년 3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선정취소 요청 (홍0동)

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1234(2022.00.00.)호 문서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3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선정대상자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고자 합니다.

□ 지원 취소내용

대상자	신청기관	선정차수	선정금액(원)	취소사유
홍길동 (80.07.14.)	00동주민센터	3차	5,500,000	예시) 2022 .5월, 00재단 긴급SOS 사업 1천만원 지원에 선정되어 타 기관 자원으로 연계하게 되어 취소 신청함

끝.

[선정기관 ▶ 자치구 포기신청 통보 공문예시]

11. 기타 추가협조 (교육참석, 모니터링, 우수사례 추천)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 참여 (1회/필수)

- 6월/9월 중 선정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기금지급요청방법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 안내교육 실시
- 기타 임대주택정보, 금융복지교육 교육 등 업무관련 전문교육 추가제공

○ 대상자 및 선정기관 담당자 모니터링 추진 협조

- 지원·이사 후 1개월 이내 지원가구의 20% 무작위 선발하여 유선모니터링 진행
- 대상자 및 해당 선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거변화 확인, 애로사항 및 사업건의사항 청취
- 협조요청사항 : 대상자 인터뷰 일정조정 및 담당자 인터뷰 응답

○ 사업홍보를 위한 우수사례 추천 및 인터뷰 협조

- 지원이후 주거환경 및 삶의 질 변화가 큰 가구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홍보추진
- 대상자 심층 대면 인터뷰 진행 (2~3가구)
- 협조요청사항 :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 참고자료

1. 공공임대주택 신청정보 (' 21 주거복지센터 매뉴얼 참고)
2. 주택금융 정보
3. 위기가구 지원사업(보증금 지원사업 포함) 정보
4.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정보
5. 서울금융복지센터 정보

1. 공공임대주택 신청정보 (주거복지센터상담매뉴얼 참고, '21년 기준)

주택유형	내용 및 신청자격	임대기간
영구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소득 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임대보증금 650만원 미만, 수급자기준 평균 보증금 190만원 (20년12월기준) · 신청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만65세 이상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1순위) 	최장 50년
주거환경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무주택시민(5년이상)을 위해 건설한 주택으로, 관련법으로 발생한 철거민을 위해 우선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은 8백만원 ~ 4천만원 상당으로 면적에 따라 편차가 큼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청약저축 가입자 	50년(특별) 20년(일반)
국민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최장 30년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직주 근접형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6천-8천만원 수준, 월임대료 25만원-30만원 수준 주택공급 · 신청자격 : 대학생,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중 각 계층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소득 	6년-20년
희망하우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서울시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 ·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5만-13만원 수준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입학 예정) 무주택자학생 (기혼자, 졸업유예자, 직장재직대학생, 재외국민 신청불가) 	최장 6년
재개발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 철거민에게 특별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철거민 우선공급 후 저소득계층을 위해 추가 일반공급 가능 · 보증금 1천4백 ~ 4천2백만원 상당으로 전용면적별로 편차가 있음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 자 (특별공급은 재개발사업 철거세입자) 	50년(특별) 10년(일반)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입주주택의 보증금 30% (1억이하 50%), 최대 4천 5백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급임대주택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소득 및 자산기준 해당 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2인이상 가구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9천만원 (2인이상 가구3억8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최장 10년
매입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주택공급방식 및 보증금 수준은 일반(2천만원대, 청년(2천만원대), 대학생 및 취업준생(1백만원) 신혼부부(방2개 소득 50%이하 3천만원대),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전세주택(중산층)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지역별 편차가 큼 · 보증금 감액을 통한 월세증액 등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가능 	최장 20년

주택유형	내용 및 신청자격	임대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매입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사다리지원사업_매입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하는 제도 - 지원유형 :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만 해당) - 신청자격 : 일반, 청년, 신혼부부, 공공리모델링 등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 자 · [SH공사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투룸 이상의 규모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도 -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세 25~35만원 규모로 지원 - 천주교 서울대교구 반민사목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본인부담금) 100만원 전액 지원가능 · [LH공사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부담 완화 및 심리적 지원통해 임대료 및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 청년매입임대 주택 지원, 초기 사례관리기관(2년)동안 보증금 및 월세무료 지원 - 월 15만원 상당 월세 실비지원, 생활필수집기 등 물품지원(50만원), 기타 월20만원 상당 교육 및 의료비 등 자립경비 지원 - 신청자격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5년 이내 아동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및 문의 	
<p style="text-align: center;">전세임대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및 청년, 한부모가족 등 입주대상 선정자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LH 또는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종류별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주택 : 보증금 1억 1천 (본인부담금 5%, 550만원, 1순위자 2%선택가능), - 신혼부부1 : 보증금 1억 3천 5백 (본인부담금 5%, 675만원) - 월 임대료 : 4천만원 이하 연 1% 책정 ·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즉시 지원하는 제도 - 신청자격 : 1순위 내 주거지원시급성 인정되는 자 (요건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이하인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 ① 고풍이 누수 결로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 저하 ②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요청세대 ③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 공매등으로 인한 퇴거요청세대 (본인소유제외)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p>최장 20년</p>

주택유형	내용 및 신청자격	임대기간
전세임대 주택	<p>· [주거사다리지원사업_전세임대]</p> <p>-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임대주택은 한도 1억2천만원 이내 최고 9천만원 보증금 지원 (본인부담금 LH공사 50만원, SH공사 100만원)</p> <p>- 신청자격</p> <p>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민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p> <p>②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p> <p>③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p> <p>④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p> <p>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p>	

○ 임대주택 신청 및 내용 문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콜센터 1600-1004

2. 주택금융 신청정보

주택금융	신청자격	지원내용	문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p>·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p> <p>무주택 세대주</p> <p>※ 34세이하 청년은 전용상품 별도</p>	<p>· 대출금리 : 연 1.8%~ 연 2.4%</p> <p>·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80%이내 (1.2억원 이하)</p> <p>· 우대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p>· 기금·돈든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대출 신청가능 (www.enhuf.molit.go.kr)</p>	<p>주택도시기금</p> <p>주택도시보증공사</p> <p>콜센터 (1566-9009)</p>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대출	<p>· 신청일 기준 노후고시원 3개월 이상 거주 중 무주택 세대주</p>	<p>· 대출금리 : 연 1.8%</p> <p>· 대출한도 : 전세금액의 100%</p> <p>※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p> <p>기금·돈든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대출 신청가능 (www.enhuf.molit.go.kr)</p>	<p>주택도시기금</p> <p>주택도시보증공사</p> <p>콜센터 (1566-9009)</p>
저소득층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p>· 공공부문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영구임대, 장기전세 제외)</p> <p>· 아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p> <p>① 소득인정액 중위 60%이하</p> <p>②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p> <p>③ 저소득 한부모세대</p> <p>④ 자연재해대책법 철거주택 세입자</p> <p>⑤ 2001.3월이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거주 중 철거인</p>	<p>· 대출금리 : 연 2%</p> <p>· 연체료 : 연8.5%</p> <p>· 10년 균등분할 상환</p> <p>·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 70% (최대 1,200만원)</p>	<p>SH서울주택도시공사</p> <p>콜센터</p> <p>(1600-3456)</p>

주택금융	신청자격	지원내용	문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50%이내, 무주택 전월세 거주 중증장애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최대 6년간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납)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8)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나는 가장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조손가족 포함) · 수도권 9천만원이하 임차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 · 대출한도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 상환기간 : 대출이후 최장 60개월 · 성실상환 시 10% 인센티브 지원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지원팀 02-861-3011

3. 주거비(보증금&월세)지원 및 위기가구 지원사업 정보

사업명	신청자격	지원내용	문의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정 · 대도시 재산 2억이하, 금융재산 7백만원 이하 · 거주지역 적십자사 문의 및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 -보증금 지원 : 최대 500만원, 생애 1회 -월세지원 : 최대 월 65만원(3-4인) 지원 보증금 지원의 경우 3개월 초과불가 -이사비 및 주거환경개선 : 500만원 이내 -연체료(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가능 · 생계지원 : 식료품 의복비 등 100만원 이내 · 의료비지원 : 500만원 이내 · 교육비지원 : 300만원이내 · 적십자 봉사원 가정방문 결연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콜센터 (1577-8179)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사업수행 복지관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내 지원 - 긴급상황 시, 2개 항목까지 지원가능 · 지원가능 항목 -생계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냉난방비), 가전제품(밥솥, 냉장고, 레인지만 구입비)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 집수리비용 및 이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02-3789-9060), 희망온돌 (070-4652-5884)
기아대책 희망등지 위기가정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가정으로, 아동(만10세~만24세)포함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 재산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 신청가능 (동, 구청 지자체 신청불가) 개인 신청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 : 가정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생계비 : 최대 6백만원 -의료비 : 질병, 수술비 등 최대 1천만원 -주거비 : 임대료 관리비 등 최대 5백만원 -교육비 : 자녀교육지원 최대 3백만원 · 선별지원 -심리정서치료 :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치료가 필요한 가정에 한해 검사 및 치료 지원 (최대 10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아대책 사무국 (02-544-9544)

사업명	신청자격	지원내용	문의
푸름나눔 주거취약계층 임차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및 경기거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화재 풍수해 등 위기상황 및 비정형 주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가구 · 공공 비영리 등 기관만 신청 가능, 개인 신청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비 최대 500만원 지원 - 가구 수, 시급성 고려해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있음 · 월세 및 임시주거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름나눔 (070-4617-6593)
아산복지재단 SOS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단 중위소득 81~100%인 대상자가 지원을 통해 취업이 가능할 경우 신청가능 · 복지시설, 지자체 신청가능 개인 신청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극복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개보수비 일체 지원 -신청내용 제한은 없으나, 필요성 및 산출 근거 기재 필요 · 지원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선착순 심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2563, 2565)
어린이재단 기본생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일반 저소득가정 내 만 18세이하 아동 양육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지원 : 최대 500만원 -LH, SH 임대주택 선정대상자 (신규만) 본인부담금 및 일반 전월세 보증금 지원 ·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 최대 500만원 ·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본인부담금 지원 : 100만원 · 주거안정비 지원 : 최대 200만원 · 학습비 지원 : 최대 300만원 · 의료비 : 수술 치료비, 심리치료 보장구 구입비용 등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본부확인 · 서울지역 (02-325-2257) · 서울북부 (02-752-2792) · 서울남부 (02-3453-6720)
미혼한부모 주거비지원 가가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만 18세미만 아동양육중인 미혼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 지원자 제외) · 복지기관 및 단체 추천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임대료 지원 - 가정 당 최대 월 15만원 임차료 지원 - 총 180만원, 12개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1)
서울청년 월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거주 중위소득150%이하 청년 1인가구 (만19세~39세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무주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임대료 최대 20만원 지원 · 최장 10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가능 · 생애 1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02-2133-1337) (콜센터 1833-2030)

4.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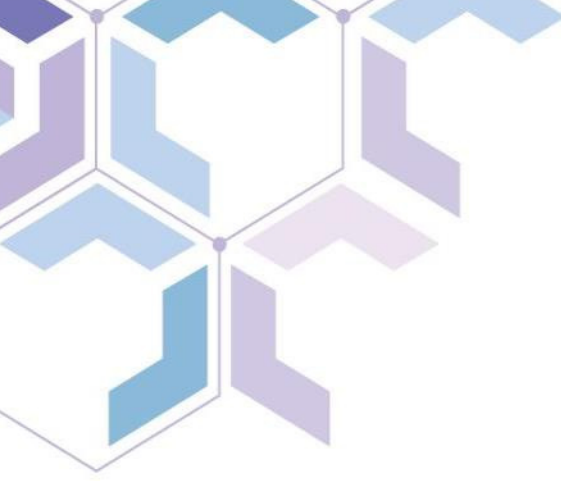
- 주거복지상담 (임대주택, 주택물색 정보 등)
- 소액주거비(임차보증금 및 연체료, 연료비 등) 지원, 집수리 상담지원 등
- 서울시주거복지센터 현황 (22. 3월 기준)

센터명	주소	연락처
중앙주거복지센터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02-2135-5690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남구 광평로 295, 서관동 309호	02-3453-2270
강동주거복지센터	강동구 올림픽로 660, 엘크루 제5층 507호	02-6933-6870
강북주거복지센터	강북구 삼양로 333, 2층	02-980-4808
강서주거복지센터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 204-1호	02-2661-0896
관악주거복지센터	관악구 중앙2길 16, 1층	02-875-3197
광진주거복지센터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나눔 4층	02-2138-8373
구로주거복지센터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	02-853-9275
금천주거복지센터	금천구 두산로70(독산동,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311-2호	02-855-4522
노원주거복지센터	노원구 상계로23길 17, 윈터행복발전소 3층	02-930-1180
도봉주거복지센터	도봉구 도봉로 152길 26 렉시온프라자 204호	02-6958-8081
동대문주거복지센터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602호	02-2138-1901
동작주거복지센터	동작구 장승배기로 131-1, 2층	02-816-1688
마포주거복지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 2차 아파텔 208호	02-6383-6100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서대문구 가좌로 77, 2층 201호	02-303-3733
서초주거복지센터	서초 청계산로9길 1-3, 서초 선포레 1층	02-6202-9000
성동주거복지센터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802호	02-6933-8051
성북주거복지센터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환승주차장빌딩 705호	02-922-5942
송파주거복지센터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22, 성현빌딩 4층	02-400-2271
양천주거복지센터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프라자 501호	02-6933-6190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301호	02-785-7044
용산주거복지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 3층	02-6713-5055
은평주거복지센터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04호	02-388-2979
종로주거복지센터	종로구 창경궁로16길 73-9, 301호	02-722-8658
중구주거복지센터	중구 마른대로 156, 광희빌딩 별관 6층	02-2138-8791
중랑주거복지센터	중랑구 신내로 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 상가 102호층	02-3421-8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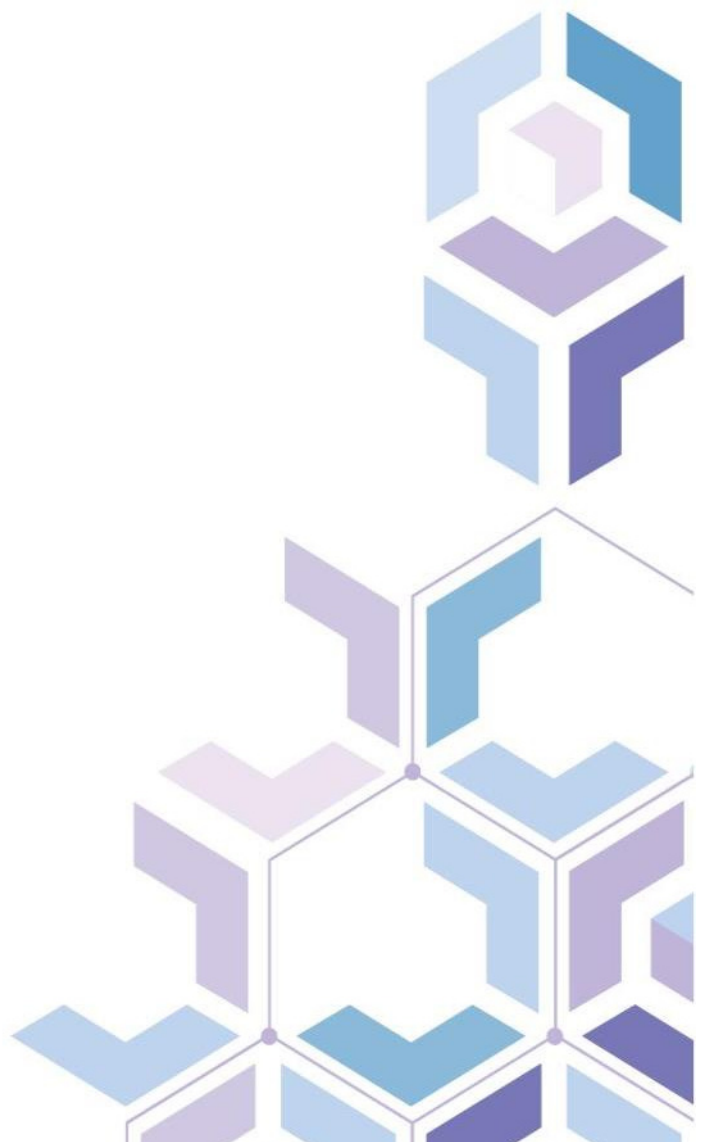
5.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정보

- 파산, 채무, 부채 등 금융복지관련 무료상담 진행
- 온라인. 방문상담(사전예약 시) 가능 (1644-0120)

센터명	주소	오는 길	연락처 (1644-0120)
시청센터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시티스퀘어 4층	시청역(2호선) 8번출구	①번 누른후 ⑤번
성동센터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민원실 내	왕십리역(2,5호선) 4번출구	①번 누른후 ⑥번
마포센터	마포구청 7층	마포구청역(6호선) 1번출구	①번 누른후 ⑦번
도봉센터	도봉구청 지하1층 종합상담센터 내	방학역(1호선) 2번출구	①번 누른후 ①번
금천센터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내	금천구청역(1호선) 1번출구	②번 누른후 ④번
영등포센터	LH서울 서부주거복지지사 1층	영등포구청역(2,5호선) 1번출구	②번 누른후 ②번
양천센터	양천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양천구청역(2호선)에서 버스	②번 누른후 ①번
송파센터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3층	경찰병원역(3호선) 1번출구	②번 누른후 ⑦번
중랑센터	중랑 자동차 등록·나눔센터 2층	용마산역(7호선) 1번출구	①번 누른후 ③번
구로센터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3층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3번출구	②번 누른후 ③번
성북센터	성북구청 3층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2번출구, 보문역(6호선) 3번출구	①번 누른후 ④번
동작센터	흑석동 1-3 6층 (22년 4월 개소)	흑석역(9호선) 1번 출구 원불교 100년 기념관	②번 누른후 ⑤번
노원센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태릉입구역(6,7호선) 5번출구	①번 누른후 ②번
강남센터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9층	선릉역(2호선) 1번출구	②번 누른후 ⑥번



신청서 및 결과보고 등 서식



주거 상황	현재 주거 형태	구분		해당(O)	보증금 / 월세	구분	해당(O)		
		점 유 형 태	자가		()원	거 쳐 유 형	단독주택		
			전 세	민간			보증금 ()원	아파트	
				SH			보증금 ()원/ 본인부담금()원	연립주택	
LH		보증금 ()원/ 본인부담금()원	다세대주택						
월세		보증금 ()원/ 임대료 ()만원	오피스텔						
무상		소유주와 관계 ()	고시촌						
					사회복지시설				
					기타				
주거비 체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체납내역 있을 시, 주거비체납확인서 필수제출</i>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		체납 월 수 ()개월		체납 총액 ()만원				
	주거위치 <input type="checkbox"/> 지상 <input type="checkbox"/> 지하(반지하포함)		방 개수 <input type="checkbox"/> 1개 <input type="checkbox"/> 2개 <input type="checkbox"/> 3개 이상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공동		주방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공동							
난방형태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연탄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기타		창문(외부환기)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개 <input type="checkbox"/> 2개 <input type="checkbox"/> 3개 이상							
사전 계약 및 임대주택 선정현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사전계약사항 있거나 임대주택 신규선정 시, 해당 증빙서류 필수 제출</i>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존거주지 계약 연장 <input type="checkbox"/> LH <input type="checkbox"/> SH <input type="checkbox"/> 일반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전세임대 <input type="checkbox"/> 매입임대 이주예정일: 00년 00월 00일			<input type="checkbox"/> 총 보증금 ()만원 <input type="checkbox"/> 월세 ()만원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선정대상자 - 본인부담금 ()만원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상담결과 및 의견 <i>(각 주제 별 많은 내용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i>	위기 구분	① 현 거주지 위기 ★중요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이유와 환경·상황 등 자세하게 기술 -현 주거환경 서술, 퇴거위기 중심으로 서술 (무료임차, 명도소송, 월세체납 등)						
		② 가족구성원 간 관계위기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배경 등을 기술 -이혼, 별거, 사별, 관계단절 등 가족관계 등						
		③ 건강위기	본인 및 동거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기술 -질병 및 치료 상황 등						
		④ 경제력위기	본인 및 동거가족의 자산, 직업, 소득 상황 등을 기술 -수급비내역, 직업소득, 실직, 자산, 채무현황, 안정적 수입발생 가능성 등						
		⑤ 자원연계망 위기	공공과 민간 자원망의 연계 및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 등을 기술 -공공 및 민간 서비스지원내역, 사례관리 내용 등						
	사후 계획	⑥ 주거계획 ★중요	향후 주거지 위치, 유형, 금액규모, 기타 자금조달계획 등 기술 -향후거주지유형 (필수작성 민간주택 물색, 임대주택신청 영구주택, 기존주택 재계약 등) -보증금 및 월세 등 금액규모, 임대주택 선정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최저 전환 계획 등 보증금 잔액 및 월세자금조달계획						
		⑦ 사후관리계획	지원 및 이사 이후 신청기관 모니터링, 사후관리 방안 -신청이후 모니터링 방안, 타구이관 계획, 기타 사례관리계획,						
자치구	()구	담당자 * 자치구 공문발송 담당자			연락처	유선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202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OO구청 OOOO과 OOO팀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제출자료 목록

신청차수	차	신청 자치구	구	신청대상자 (성명)	(인)
신청기관명		담당자	(인)	담당팀장	(인)
구분	체크	첨부서류	양식	비고	
필수 서류		신청서	서식 1호	대상자 상담을 바탕으로 신청기관 담당자가 작성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3호	대상자 본인 직접 작성 서명	
		현거주지계약서	-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등본)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차상위 : 수급증명서 증명서 없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장기요양보험비 제외)	
추가 서류		현 주거상태 확인서류 -해당 시, 필수제출	서식 4호	월세 체납(납부) 확인서	
			서식 5호	보증금 미납 확인서	
			서식 6호	사용대차 확인서	
			-	고시원 거주확인서, 철거안내문, 퇴거명령 시 내용증명서 등	
			-	시설이용(퇴소예정)확인서	
			-	임대주택 선정 대상자 확인서류 및 사전 계약자료 등 -LH/SH 임대주택 선정 안내문, 새로 이주할 거주지 계약서 -LH/SH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잔액 표기된 납부지로 등	
		부채증빙 자료	-파산신청자료, 금융기관 등의 부채관련 자료 등 -대출관련 내역 등,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내역 등		
		위기상황 발생 관련 증빙자료	-사례관리 관련 기록문서 및 회의록 -열악하거나 안전에 취약한 주거환경 사진자료 등		

- ※ 제출자료 목록표는 수기 작성하고, 신청자 및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간 자료를 스캔하여 제출
-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편집 가능한 상태로 제출(읽기전용으로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엄수, 신청내용을 증빙할 적합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 제출한 목록에 체크(✓)표시, 기타자료는 해당 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 제출자료 용량이 큰 경우 전자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진파일 등을 용량이 작은 형태로 변환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연락(☎신민정 6353-0303)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신청 사업 이외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0조(배분기준), 제21조(배분신청),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활용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에 따른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전자적 연계하여 제공 받아 자격기준에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 활용	5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자치구청 서울시청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관리이관기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신청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운영을 위한 조사 및 업무처리에 활용	5년

※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2022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시복지재단 귀중

서식4. 주거비체납 관련 증빙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주거비 체납사실 확인서

계약사항	계약일자 :
	보증금 : 600만원 월임차료 : 30만→35만 (2022. 01인상)
임차인명	
주 소	
연 락 처	
체납내역	*월임차료, 월관리비 등 항목 기술
체납기간	1. 2021.10 ~ 2021.12 (3개월) 2. 2022.03 ~ 2022.04. (2개월)
체납금액 산출근거	1. 3개월 x 30만원 = 90만원 2. 2개월 x 35만원 = 70만원 ※ 구체적으로 기록
체납금액	1,600,000원

위 가구는 상기 금액과 같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아파트, 공공임대 등 공동주택) 확인기관명 : _____ 관리사무소장 0 0 0 (직인)

연락처 : - -

(*빌라, 단독, 주택 등) 임대인 : _____ (인)

연락처 : - -

서식5. 보증금 미지급확인서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보증금 미지급 확인서

계약사항	계약일자 : 2022. 0 . 00
	보증금 : 0000원, 월세 00원
임차인명(대상자)	김00
매물주소	서울특별시
연 락 처	010-
미지급내역 및 사유	임차보증금 00원
미지급금액	500만원

위 가구는 상기 금액과 같이 보증금이 미지급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 00. 00.

임차인 : 000 (인)

연락처 : 010 - -

임대인 : 000 (인)

연락처 : 010 - -

서식7. 결과보고서 양식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결과보고서

		★가정방문 날짜		□ 2022. 00. 00	
신청차수	n차		자치구	구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 소					
지 원 금	지원금액	실제 지원금액 ()원			
지원 후 계약금액	계약 금액	□민간	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공공	보증금 ()원, 본인부담금 ()원 월임대료 ()원		
지원이후 주거현황	이사일	2022. 00. 00 이사완료 (시기미도래, 0월 0일 예정)			
	주거유형 (민간/공공)	□민간주택 □임대주택(전세임대) □임대주택(매입임대) □임대주택(영구임대) □기타 ()			
	주거유형(건축)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기타 ()			
	주거위치	□지상 □지하(반지하)			
임차보증금 지원 이후 제공된 서비스	해당시 (0,X)		해당시 (0), 해당서비스 ■ 표기		
	민간	현금	0	□월세 □이사비 □생활비 □의료비 □기타 ()	
		현물	X	□생활용품 □가구 □전자제품 □식료품 □기타()	
		서비스		□복지정보상담 □이사지원 □심리상담 □금융상담 □법률상담 □집수리 □주거상담 □기타 ()	
	공공	현금		□긴급생계비 □바우처(체육,문화 등) □기타 ()	
		현물		□생활용품 □가구 □전자제품 □식료품 □기타 ()	
서비스			□복지정보상담 □이사지원 □심리상담 □금융상담 □법률상담 □집수리 □주거상담 □기타 ()		
지원 전후 주거지 사진	사진1 (전)		사진2 (후)		

사후지원 상담기록 (3개월 시간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7.15.상담내용 간략히 ○ 2022.8.12.상담내용 간략히 ○ 2022.9.16.상담내용 간략히 				
변화 사례	<p>※ 주거, 건강, 근로, 경제, 심리적 안정, 가족.사회관계 등 욕구유형별 기입될 사항 구분작성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 이전주거지보다 청결한환경, 곰팡이도 없고 ,화장실 주방을 제대로 갖춤 ○ 심리적 안정 : 전에 있던 우울감 및 고립감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표정이 밝았으며, 본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해주는 주민센터에 만족감을 드러냄 				
향후 계획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유지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일 정기적으로 납부 사항 체크 예정 ○ 복지관 이외 주거지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 종교시설에 동행 예정 ○ 관할동주민센터, 체육공원 등의 시설이용 정보제공 				
*만족도 ※ 대상자 확인 후 체크	<p>1-1. 본 사업 지원 전 주거 만족도</p> <p><input type="checkbox"/> 매우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만족</p> <p>1-2. 본 사업 지원 후 주거 만족도</p> <p><input type="checkbox"/> 매우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만족</p> <p>2-1. 주거지 이전 전 삶의 질 : (_____ 점)</p> <p> ----- ----- ----- ----- ----- </p> <p>0 1 2 3 4 5</p> <p>2-2. 주거지 이전 후 삶의 질 : (_____ 점)</p> <p> ----- ----- ----- ----- ----- </p> <p>0 1 2 3 4 5</p>				
증빙자료 첨 부	체크	증 빙 내 용		부수 (매)	비 고
	<input type="checkbox"/>	결과보고 제출일 기준 등본 1부 (계약된 거주지로 이사 여부 확인 위함)		1	※ 제출 불가 시 보고서 및 공문에 미제출 사유 명시

위와 같이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기관명(부서명):

전 화 번 호 :

담당자 성명 :

* 결과보고서는 한글파일로 송부합니다.

■ 서식 8. 지급요청 제출자료 목록 (선정이후 기금지급 요청 시)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기금지급요청 체크리스트

신청기관명		대상자		담당자
구분	체크	첨부서류	양식	비고
기본 필수 서류	✓	계약서	-	- 이사 갈 집 계약서 - 임대주택일 경우 공사-대상자, 임대인-대상자 용 2부 모두 제출 - SH 전세임대 신규계약자, LH매입임대 신규계약자는 계약사후 제출 (사전에는 별도 추가서류 제출) ※ 스캔본이나 사진이나 숫자나 이름이 명확하게 표기 (흐릿)
		임대인 통장사본	-	- 계약서 내 기입된 임대인 성함 및 은행 계좌번호가 통장사본과 동일한지 확인 (지로용지 시 생략가능)
		서약서	서식9호	- 신청기관 담당자와 대상자가 함께 작성·서명 - 계약서에 근거한 실제 청구금액(납입잔액)으로 작성
주택유형별 추가 및 기타서류 (해당자만)				
추가 선택 서류	전 세 임 대	SH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계약확인 서약서	서식10호	- SH 전세임대 (신규)계약 당사자는 필수 제출 - 권리분석 결과에 의거, 서약서 금액 작성 - 대상자가 작성·서명 후 신청기관에서 이를 확인 (기관직인 가능)
	매 입 임 대	지로납입 영수증	-	- 해당자만 제출 - 잔금이 명확하게 표시된 지로납입 용지
		LH 매입임대 입금 안내문	-	- LH(신규)매입임대 당사자는, 공사에서 받은 납입계좌가 명기되어있는 안내문 사본 제출
		계약사실 확인원	공사양식	- 최저보증금 전환 조건부 선정 시 제출 - 실제 전환된 최저 보증금액 명기되어 있는지 필수확인 - 해당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영 구 임 대	지로납입 영수증		- 해당자만 제출 - 잔금이 명확하게 표시된 지로납입용지	
기타		000		- 기타 재단에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 등

※ 제출한 목록에 체크(✓)표시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보증금지원 서약서

서울시복지재단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일금육백만원(₩6,000,000)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원받아 계약하였습니다. 임차인 홍길동은 다음을 서약합니다.

1. 임차보증금 외 월세채납 변제, 부채상환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주거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보증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기관 _____의 사후지원(가정방문·유선연락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2022. . .

임 차 인 : 홍00 (서명)

담 당 자 : 김00 (기관명) (서명)

2022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선정 안내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2년 00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안내드리는 지원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

1. 주거지 계약 : 귀하께서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진행함
(※장애인, 노약자 등 직접 계약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관에 동행 요청함
기 지급한 계약금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2. 지급요청 서류 제출 :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서약서를 신청기관에 제출함
(※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같아야함)
3. 지급요청 서류 제출 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근무일 기준 7일 이내(토일
제외) 임대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함.
(※ 서류검토 시, 오류가 있을 경우 늦어질 수 있음)

▶ 지급요청 기간 ◀

2022.00.00.~00.00.이며, 최대 2022.00.00.(요일)까지 연장 가능함.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주하는 질문 (FAQ)

Q 1

사업신청서는 자치구만 재단에 제출 할 수 있습니까?

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최종적으로 자치구에서 재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①개인정보보호 ②첨부자료의 공적인증을 위해 일반메일이나 팩스사용을 지양하고 행정전산망을 이용합니다.

즉, 공동모금회는 모든 문서를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한 번거로움과 기간을 최소화하고 본 사업이 지향하는 ③지역의 민·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자원공유 및 연계 ④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방지 및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공공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례추천 및 사업신청은 사후지원이 가능한 자치구(구청,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복지관, 자활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풀뿌리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 직접 개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2

신청접수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서식2. 자료제출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항목을 검토합니다.

서류	작성내용
★ 자료제출목록 (서식2)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목록을 수기로 체크 및 대상자, 담당자, 기관장이 서명하여 첨부. 제출자료에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
사업신청서 (서식1)	신청가구 현황 및 신청내용 요약, 신청가구에 대한 세부현황, 위기상황 발생원인, 사후지원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서식3.)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신청기관, 자치구, 재단, 서울시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동의서
현 거주지 계약서 및 등본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 계약서 사본 및 등본, 고시원 및 무료임차일 경우 해당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본, 소득기준자료(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신청내용(위기상황) 및 지원결과를 증빙하는 적합한 근거자료 등

Q 3

구청으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결정을 받았는데,
부족하여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기금은 서울시공동모금회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마련된 희망온돌 민간재원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주거비 : 긴급복지 긴급주거비 지원 3개월(365,800x3개월) + 서울형 임차보증금 300만원

Q 4

서울형 임차보증금 기금에 신청하여 심사한 결과,
미선정된 사례입니다. 다른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심사 시 신청 내용이 부적합하여 미 선정된 사례는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은 적절했으나 사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보류된 사례는 자치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5

신청금액과 선정금액이 다릅니다.
선정금액 결정기준을 무엇입니까 ?

선정금액은 최대지원금 6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신청자의 자산여부를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해당 자산은 기 보유(현주거지) 보증금, 예·적금액 중 185만원 이상 보유금액 등이 해당되고,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 보증금이 있다면 최대 지원금액에서 보유보증금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만원, 월세30만원 다가구주택 거주 시, 신청금액이 600만원이라 하더라도, 선정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최대금액 600만원- 기보유보증금 300만원 = 300만원) 단, 보증금을 월세체납 등으로 다 소진했을 경우, 보증금 체납확인서(서식4.)를 제출한다면, 이를 기 보유보증금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Q 6

선정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선정결과통보는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자치구에 공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기관은 각 자치구의 담당자에게 선정결과를 전달받아 기금지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7

지원대상 선정 후 지급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금지급은 지원가구(개인)에 직접 지급이 불가하고, 임대인/LH,SH공사 등에 복지재단 명의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지급합니다. 기금지급요청은 심사결과 발표일(공문발송일)에서 다음날부터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금 지급일은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자치구에서 행망(LDAP)을 통해 발송한 공문을 재단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되오니, 신청가구에 사전에 공지하여 진행 중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Q 8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대상자의 사정으로 기금집행이 늦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산집행은 선정결과 통보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대 3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정결과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사용연장승인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면 선정결과가 자동 취소됩니다.

지원가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유를 공문에 명기하여 자치구를 통해 「사용연장승인」을 요청하여 주시고, (선정 후 최대 3개월 이내 집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필요한 다른 가구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용여부에 대해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 후 사용치 않을 경우 ‘포기’ 나 ‘취소’ 공문을 자치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 9

기금지원 후 결과보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가 타구로 진출 했을 경우, 결과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결과보고는 대상자 선정일(결과발표일)에 준하여 3개월간 지원가구를 모니터링 한 후 제공된 양식(서식7.)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자치구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

대상자가 타구로 진출 시에도 결과보고서 작성은 신청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3개월 모니터링 기간이 아닌 타구 진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리적으로 먼 타구로 진출 시, 가정방문 대신 유선을 통해 대상자 상황확인, 진출지 관련 복지정보안내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메일 등으로 이주 후 주거지 사진 및 등본을 받아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기금지원을 통해 타동·타구 진출예정일 경우, 신청·선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선정일로부터 진출 이전까지 해당 사례관리 기록 등을 미리 관리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공동체팀 신민정 (02-6353-0303), handtong@welfare.seoul.kr